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③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총족 감면세액
⑩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0				
⑩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⑩③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⑩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⑩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⑩⑥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⑩⑦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⑩⑧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5항	17C				
⑩⑨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5항	179				
⑩⑩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⑩⑪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⑩⑫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⑩⑬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⑩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⑩⑮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영 제60조제5항	169				
⑩⑯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8				
⑩⑰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5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9				
⑩⑱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⑩⑲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⑩⑳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⑩㉑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⑩㉒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 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⑩㉓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⑩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⑩㉕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 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⑩㉖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⑩㉗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4항	13N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총족 감면세액
128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6항	11N				
12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6항	13S				
13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 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13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1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F				
1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H				
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13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136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 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137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7항	13Q				
138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139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140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141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1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14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6항	13T				
144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145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9항	13U				
14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 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6항	17A				
147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 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 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6항	13H				
148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6항	17B				
14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6항	13V				
150 기타		164				
151 세액감면 합계		1A4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108~109, 117, 127, 133 ~ 148 에 대해 적용)

- 117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 127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108~109 133 ~ 148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 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 자산 투자누계액		⑰ 일반감면한도 (=⑮)	
	⑯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⑳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㉑, ㉒]) ㉑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㉒ 투자누계액(⑮ × 100%)	
	⑰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㉑, ㉒]) ㉑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㉒ 투자누계액(⑮ × 20%)			
	⑱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⑯+⑰)		㉑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⑰, ⑱])	

2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14 - 10) 또는 (18 - 10) 또는 (21 - 10)

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23 합계	24 개월수	25상시 근로자수 (=23÷24)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26
직전 과세연도															27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28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26-27)	29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28)
1억원	500만원		

⑥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30 합계	31 개월수	32상시 근로자수 (=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33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32상시근로자 수	33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32)
1억원	20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을"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을"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을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⑪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8.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중소기업 [] 중견기업	

2.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 기술
---------	-----------	----------	--------

3. 기술이전·대여에 관한 사항

⑤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여 [] 부
⑥ 이전·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대여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500억 원 이하 적격 여부 [] 여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70억 원 이하 적격 여부 [] 여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여 [] 부

작성 방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해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허번호는 이전·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 등록번호는 이전·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외하며, 이전·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